

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연정산 결과 초과지급금이 확인되어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7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



1. 건 명: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1. 6. 7. ~ 2021. 6. 2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서울남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주영(Tel 02-2639-241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 관련 명단

(공고기간: 2021. 6. 7. ~ 2021. 6. 21.)

연번	대상자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유*찬	1961.2.1.	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초과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안내	1,087,700원	20,220원	장년근로시간단 축지원금 연정산 결과 초과지급금 회수	폐문부재	(1차)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*** 602호
								(2차)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*** 602호